

변경 대비표

2020.05.15

○ 펀드명 : 흥국더파트너스알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정정사유 :

- 환매청구기준일 변경
-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상세내역 :

[집합투자규약]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5조(수익 증권의 환매)	① (생략)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1호에서 정하는 날을 환매청구기준일로 한다. <u>또한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환매청구기준일로 한다.</u> 1. 환매청구기준일: 매월 28일 ③ (생략) ④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환매청구기준일의 <u>전전월</u> 21일 15시 30분까지 환매수량을 청약하여야 하며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수량을 청약 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약수량을 통보하고 환매청구기준일에 맞추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기준일 이전에 환매청약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으며, 수량 조정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판매회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수량만큼 수익자가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⑤~⑨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이 투자신탁은 <u>매월 28일로부터 제5영업일을 환매청구기준일로 한다. 다만, 매월 28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을 환매청구기준일로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환매청구기준일의 <u>전전전월</u> 21일 15시 30분까지 환매수량을 청약하여야 하며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수량을 청약 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약수량을 통보하고 환매청구기준일에 맞추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기준일 이전에 환매청약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으며, 수량 조정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판매회사를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수량만큼 수익자가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⑤~⑨ (현행과 같음)
제26조(환매 가격 및 환매 방법)	① (생략) ②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의 환매 청약을 받은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한 <u>환매청구기준일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u> ③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① (현행과 같음) ②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의 환매 청약을 받은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한 <u>환매청구기준일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u> ③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

	<p>(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의 환매 청약을 받은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한 환매청구기준일로부터 <u>제6영업일에</u>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환매대금 지급일이 외국의 공휴일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 또는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의 환매 청약을 받은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한 환매청구기준일로부터 <u>제2영업일에</u>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환매대금 지급일이 외국의 공휴일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업일 또는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환매대금 지급가능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27조(환매 연기)</p>	<p>①~⑥ (생략)</p> <p>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u>이 일정한 날의 4영업일 전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환매지급일 4영업일 전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2. (생략)</p>	<p>①~⑥ (현행과 같음)</p> <p>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u>이 일정한 날(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환매지급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③ (생략)</p> <p>④ <신설></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u></p>